

결 정

2018 - 2032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
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

주 문

스포츠조선 2018년 2월 9일자 15면 「고액환수 대성공!/금주 환수율 5000%-
그린북경마 VIP클럽」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치한다.

이 유

스포츠조선의 적시 광고는 경마에서 고액을 환수할 수 있다며 선전하는 내용이다.

광고는 『1월 26일 금요6경주에서 쌍승식에서 141.7배, 복승식에서 42.4배, 2월 4일 일요7경주에서는 쌍승식에서 91.9배, 복승식에서는 35.2배로 적중해 고액 환수에 대성공했다』 면서 『금주 환수율 5000% 확정』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.

그러나 과거 경마에서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고 해서 이번 주 경마에서도 5000% (50배)를 벌 수 있다고 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. 특히 아직 열리지도 않은 경주결과에 대해 『확정』 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 과장으로 볼 수 있다. 현행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은 거짓 허위 등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.

따라서 이들 광고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, 광고내용을 믿고 투자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.

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,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, 3, 4,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(4)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년 3월 14일

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

위원장	김용담	김용담
위원	정승호	정승호
	장명국	장명국
	박재현	박재현
	장인철	장인철
	김규식	김규식
	강희	강희
	하윤수	하윤수
	김영모	김영모
	박미경	박미경

○ 적용 조항

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.

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.

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.

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(4)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